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행계획서

2022.

SU지주

SU holdings Co., Ltd.

안전한 일터! 건강한 미래!

SU세이프어스

【 목 차 】

1. 위험성평가의 목적	3
I. 위험성평가란?	4
II. 목적	4
III. 추진절차 및 내용	4
IV. 법적근거	5
V. 관계법령	5
VI. 벌칙 및 과태료	5
2. 위험성평가 방법 및 시기	6
I. 위험성평가의 방법	7
II. 위험성평가의 시기	7
III.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8
3. 컨설팅 흐름도 및 세부계획	9
I. 흐름도	10
II. 세부계획	10
4. 위험성평가 인정	12
I.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13
II. 인정 신청 대상	13
III. 인정 시 혜택	13
IV. 산재예방요율제란?	13
V. 적용대상	13
VI. 적용방법	14
VII. 유효기간 및 인하율	14
VIII. 관련근거	14
5. 첨부자료	15
[첨부1]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	16
[첨부2] 「위험성평가」 교육 지원신청서	17

1. 위험성평가의 목적

I 위험성평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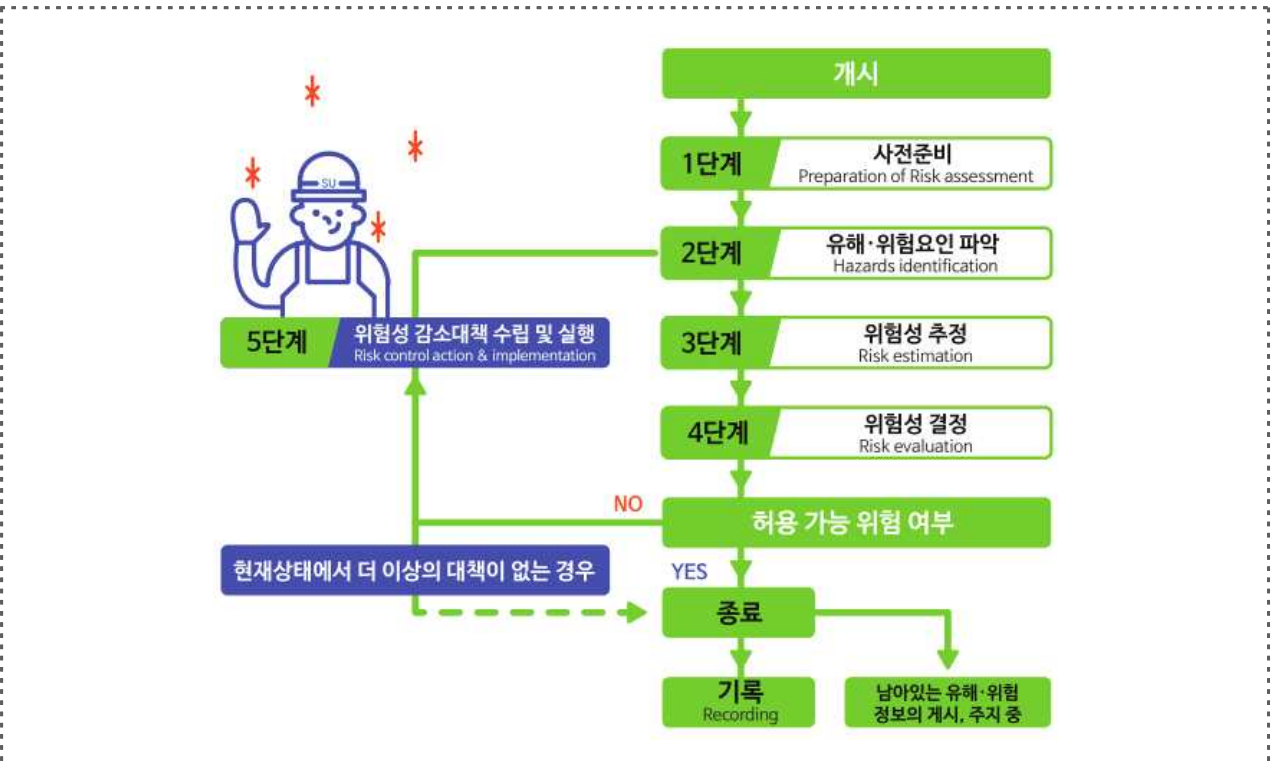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II 목적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재해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고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완료의 개념이 아니며,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III 추진절차 및 내용



IV 법적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V 관계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VI 벌칙 및 과태료

위반행위	벌칙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벌칙)]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1호	300	400	500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1호	300	400	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1호	300	400	500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1호	300	400	5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위험성평가 방법 및 시기

I

위험성평가의 방법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되어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에 대해 근로자와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여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

-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II

위험성평가의 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이 최초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로 2015년 3월 13일 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착수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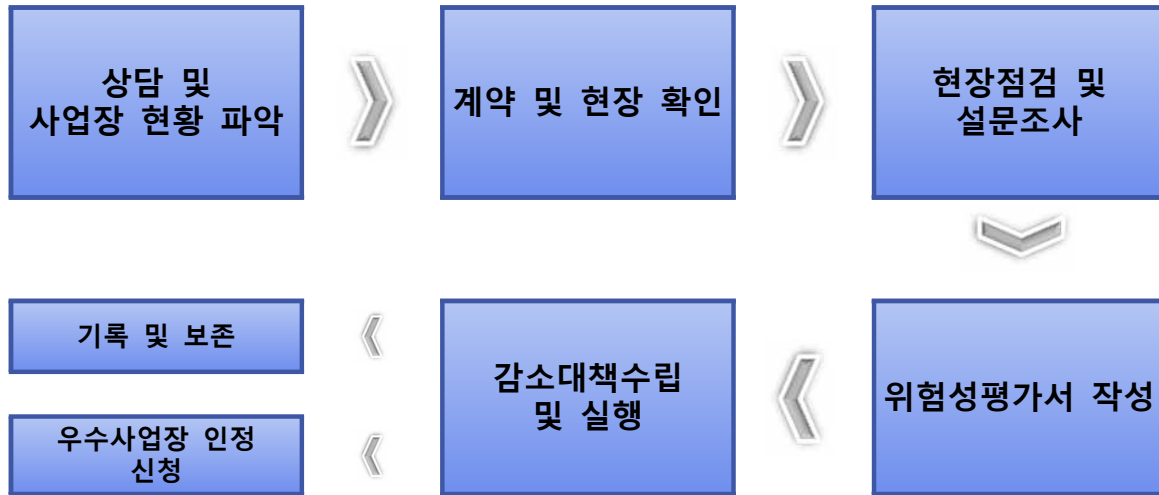
-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III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보존

-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컨설팅 흐름도 및 세부계획

I 으뜸도



II 세부계획

① 상담 및 사업장 현황 파악

▶ 내용 : 상담을 통하여 사업장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 [상시근로자 수, 업종 등]

② 계약 및 현장확인

▶ 내용 : 사업장 방문 후 계약 체결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하는 등 사전준비 실시

③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

▶ 내용 :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설문조사), 안전보건자료 검토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④ 위험성평가서 작성

▶ 내용 :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기법, 체크리스트(Check List) 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기법 등 사업장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여 평가서를 작성한다.

⑤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

▶ 내용 : 작성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⑥ 기록 및 보존

▶ 내용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⑦ 우수사업장 인정

▶ 내용 : 소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수 100명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 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보건공단에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제조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인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 20% 인하

⑧ 참고사항

▶ 내용 : ⑦ 항목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에 대해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컨설팅을 통하여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 가능함.

4. 위험성평가 인정

I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이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공단 심사원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II 인정 신청 대상

- ▶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
- ▶ 건설공사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III 인정 시 혜택

- ▶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 유예(대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정함)
-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 위험성평가 인정 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보조금 추가 지원

IV 산재예방요율제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V 적용대상

- ▶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 ※ 산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징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일괄 적용사업장은 각각의 사업개시번호별 상시근로자 수의 합산한 근로자 수

VI 적용방법

- ▶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이 있으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 동안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산재보험료가 징수됩니다.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활동
- 사업주교육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적으로 산재 예방계획을 수립하는 활동

VII 유효기간 및 인아율

- ▶ 위험성평가 인정 : 3년 20%
- ▶ 사업주교육 인정 : 1년 10%
- ※ 요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일할계산)
- ※ 사업주가 2개의 재해예방활동 분야(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를 인정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보험연도 적용 인하율을 각각 계산한 후 인하율이 높은 것을 적용

VIII 관련근거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 예방요율의 적용)
- ▶ 산재예방요율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9-26호)

5. 첨부자료

【별지 제1호서식】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input type="checkbox"/> 인정 <input type="checkbox"/> 재인정)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 -
		팩 스 번 호	- -
위험성평가 담당자		전화번호(휴대폰)	- -
			-
소재지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근로자수 (총 공사금액)	명 (억원)
기 타	*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의 범위에 포함되는 수급사업장 명단(사업장명, 대표자, 업종, 근로자수, 연락처 등) 등을 기재(별지로 첨부 가능)		
우리 사업장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였으므로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 까지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가입 불가)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위험성평가」</p> <p><input type="checkbox"/> 사업주교육</p> <p><input type="checkbox"/> 평가담당자교육</p> <p><input type="checkbox"/>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원신청서</p> </div> </div>			
사업장명	(건설공사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대표자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 <small>* ()는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기재</small>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교육 참석자 (업무담당자)	성명: <small>* 컨설팅 지원신청 시는 업무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small>	전화번호	- -
		(휴대폰)	- -
소재지	(-)		
소분류업종 (공사기간)	(. . ~ . . .)	근로자수 (총 공사금액)	명 (억원)
<p>사업장이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input type="checkbox"/> 사업주교육 <input type="checkbox"/> 평가담당자교육 <input type="checkbox"/> 컨설팅(종합, 안전, 보건) 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0px;">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right: 100px;">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p>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p>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회원가입 및 관리</p> <p>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 아이디,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 선택정보 : 주소, 이메일</p> <p>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회원 가입일로 부터 회원 탈퇴 까지</p> <p>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시에도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 등의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정보는 미입력시 회원 가입 불가)</p> <p style="text-align: center;"> <input type="checkbox"/>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p>			